

2025년 주요 환경정책의 개선 방향과 시사점

환경부는 최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선별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전면 개편,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지역 맞춤형 전환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정책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환경부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정책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 주요 환경정책의 변경 내용 분석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편

환경부는 2025년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우선 시장참여자 범위가 기존의 할당대상업체에서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거래 방식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도 허용되어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5년 6월부터 적용되는 배출권 이월 승인 기준의 완화로, 각 차수별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의 순매도량 대비 이월 가능 비율이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근거규정(시행일)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할당대상 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추가	배출권거래법 ('25. 2)
거래방법 확대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	배출권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도 가능	배출권거래법 ('25. 2)
이월승인 기준 완화	각 차수별 배출권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각 차수별 배출권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25. 6)

Related Areas

ESG

환경

에너지

Contact

손금주 변호사
02-528-5094
kjson@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02-528-5284
yhyoon@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
02-528-5698
weonjinkim@yulchon.com

이민호 고문
02-528-5441
minholee@yulchon.com

정영익 고문
02-528-6458
yejung@yulchon.com

2.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선진화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2025년을 기점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조정되어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됩니다. 다만, 1톤 미만 신고대상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25년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하고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주기가 기존 1-2년에서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1-4년으로 차등화된다는 것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근거규정(시행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 완화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연간 1.0톤 이상 등록의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25. 1)
		신고대상(1.0톤 미만)은 신고정보 대국민 공개,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25. 8)
시설검사 주기 차등화	1-2년 획일적 적용	1-4년 차등화 (위험도·취급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25.8~)
영업허가 기준 차등화	유해물질 취급 시 일률적으로 영업"허가" 대상	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으로 영업 허가/신고 차등화	화학물질관리법 ('25.8~)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지역 맞춤형 전환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5년 2월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시·도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절차가 이원화되어,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로,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로 진행됩니다. 이는 획일적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근거규정(시행일)
소규모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조례평가 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도 조례평가 실시 가능	환경영향평가법 ('25. 2)
평가 체계	단일 평가 체계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신속 평가, 심층평가로 이원화	환경영향평가법 ('25. 10)

4. 환경피해구제절차의 통합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구제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근거규정(시행일)
건강환경피해조사- 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 (피해조사) 환경부 •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피해구제) 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통합처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보건법(25.1~)

5. 공공부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됩니다. 공공의무생산자(전국 지자체)는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는 매년 바이오가스법이 정한 방법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자체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용역사가 바이오가스법이 정한 방법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해당 지자체의 생산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용역입찰 공고문 등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6.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을 받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돗물 공급 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시설 운영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7.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i)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ii)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 기본 방식(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방식)에서 정액 지원 방식(자녀 수에 따라 100~300만원 추가 지원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II.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및 최근까지 공개된 정부 발표자료 등에 근거하여 2025년 환경부의 정책 방향성 내지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환경부는 “획일적 규제”에서 “맞춤형 규제”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차등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주기의 위험도별 차등 적용, 배출권거래제의 이월한도 확대 등은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로의 변화를 보여줌.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환경부는 환경정책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배출권거래제도에 기업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녹색전환보증사업을 통해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것 등이 이런 경향을 보여줌.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됨
- 셋째, 환경부는 환경보호에 더해 사회적 형평성, 복지 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환경피해 구제절차의 통합,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 등은 환경정책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줌

환경부의 규제를 받는 기업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정책 방향성을 참고하되, 특히 2025년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ESG 경영 내지 환경 경영 관련 추진 전략, 실행과제 등을 변경하거나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도) 기업은 확대된 이월한도를 고려한 새로운 배출권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수 있음. 특히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고,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새롭게 허용됨에 따라, 거래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배출권 확보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 관리)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관련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른 새로운 검사주기 분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전사적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고, 특히 1톤 미만 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비한 자료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함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절차 관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음. 특히 신속평가와 심층평가로 이원화되는 평가체계에 대응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평가 절차가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